

# 언어교육원규정

개정 : 2022. 07. 08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명칭)

본 교육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### 제2조(소재지)

교육원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.

### 제3조(설립목적)

교육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,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강좌 등을 운영함으로써 본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(교육과정)

교육원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1. 한국어 교육과정
2. 외국어 교육과정
3. 기타 교육과정

### 제5조(정원)

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어교육원장(이하 ‘원장’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### 제6조(수업)

교육원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·야간, 주말 혹은 계절제 등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### 제7조(교육장소)

교육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 칙

### 제8조(조직)

- ①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

- ② 교육원에는 원장, 운영위원회, 행정실을 둔다.
- ③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며 교육원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#### 제9조(교육부장)

원장은 필요시 본교 교원이나 교육원 교·강사 중에서 교육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# 제3장 운영위원회

#### 제10조(운영위원회)

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둈다.

#### 제11조(구성)

- ①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행·재정부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간사는 교육원 행정실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#### 제12조(운영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임 위원을 임명하며, 신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#### 제13조(회의)

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#### 제14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3.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#### 제4장 재정 및 운영

제15조(재정)

- ① 교육원의 재정은 수강료와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

제16조(예산편성)

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본 대학교 교비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

제17조(장학금)

교육원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18조(강사료 및 제 수당)

강사료 및 제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행·재정부총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19조(감사)

교육원의 제반 행정 및 회계업무는 본교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는다.

제20조(보칙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